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33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미래에셋증권(주)

2. 조치내용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에서 금지하는 ‘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’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(주)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(1)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

-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면 아니 되는데도

- 미래에셋증권(주)(△△△△팀)은 (주)◇◇◇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20<<<.<<<.<<<. 청약 미달로 실권된 주식 ■■■■■주(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취득한 후 상장 당일(20<<<. <<<. <<<.) 동 주식 중 ●●●●●주(○.○○억원)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

- (증선위 수정심의 사유) 주식처분 규모 및 처분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, 실권주로 인수한 주식 중 일부만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결과를 기존 ‘중대’에서 ‘보통’으로 변경(과태료 40백만원 → 30백만원)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71조 제7호
-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19조 제5호